

#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 검 토 의 견 서

1. 발의연월일: 2022. 4. 1.

2. 발의자: 박종길, 배지훈, 이성순, 김귀화, 김화덕, 이신자

### 3. 제안이유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를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도시를 구현하여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 보호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제5조)
-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6조~안 제8조)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안 제14조)
- 각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행사항(안 제15조~안 제24조)
-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 및 확산을 위한 이행사항(안 제25조~안 제28조)

### 5. 참고사항[관계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

## 6. 검토의견

- 해당 의원발의 기본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위임 및 온실가스감축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 입법의 필요성, 상위법령 저촉 또는 중복 여부, 과도한 재정 또는 행정력 부담 여부 및 법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전반적인 입법취지에는 동의하나,
- 제10조 및 제27조의 규정은 표준조례안을 인용하여 세부사항을 추가·변경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해당 조례안 대한 수정 의견을 제출함.

## 7. 수정내용

조례안	수정(안)	사유
<b>제26조(탄소중립 지원센터 의 설립)</b>  ① ~ ③ (생략) <u>&lt;신설&gt;</u>  ④ (생략)	<b>제26조(탄소중립 지원센터 의 설립)</b>  ① ~ ③ (조례안과 같음)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한 지원센 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 · 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 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 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⑤ (제4항과 같음)	지원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요청 근거 마련 (표준조례안 준용)

<신설>

## 제27조(탄소중립 지방정부

### 실천연대 참여) ① 구청

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시행령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 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및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표준조례안 준용)

**제27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및 제15조에서 제25조까지의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부문별 사업과 홍보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8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및 제15조에서 제25조까지의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위한 부문별 사업과 홍보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조례안과 같음)

지원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위하여 문맥  
조정  
(마련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제28조(국가 등과의 협력 관계)** (생략)

**제29조(국가 등과의 협력 관계)** (조례안과 같음)

조문 이동

## 【붙임】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

## 검토 추진 경과

### 1. 의원발의 조례안 수정[조정]내역

당초안(사전협의 전)	수정안(사전협의 후)
<p><b>제10조(위원의 임기)</b>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b>제11조(위원의 해촉)</b>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li><li>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li><li>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li><li>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 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li></ol> <p><b>제12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b></p> <p>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li></ol>	삭제

<p>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p> <p>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p> <p>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 하였던 경우</p> <p>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p>	
--	--

## 2. 사전 협의내용

### ○ 반영사항

- 「대구광역시 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와 중복 된 3개 조문 삭제
- 당초 31개 조문에서 28개 조문으로 조정

### ○ 미반영 사항: 없음

## 3. 추진경과 등

- 조례안 최초접수(온메일 등): '22. 3. 23.
- 전문위원 또는 의원 협의: '22. 3. 25.~30.
- 협의 후 조정안으로 수정: '22. 3. 31.

##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수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중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운영계획
2. 지원센터 인력·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제28조 및 제29조로 하고,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영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종전의 제27조)제1항 중 “마련할”을 “할”로 한다.